국회에서 의결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이 재 명 인

2026년 10월 20일

국 무 총 리 한 성 숙

국 무 위 원
보건복지부장관 정 은 경

◉법률 제22094호

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

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4항 중 “비전염성결핵환자”를 “비전염성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”로, “결핵환자라는”을 “결핵환자 또는 잠복결핵감염자라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또는 고용주가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